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4. 1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. 4. 2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4. 4. 3.

다. 상정일자: 제267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24. 4. 16.)

상정, 심사, 보류

제267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24. 4. 17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재무과장 김종임】

가. 제안이유

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통보(2023.12.)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(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)을 반영하여 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함.

나. 주요내용

가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1명 감원(안 제9조)

- 현행(6명): 위원장(부구청장), 부위원장(재정관리국장), 위원(복지동행국장, 도시환경국장, 교통건설국장, 디지털재정과장)

- 변경(5명): 디지털재정과장 삭제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권하나)

- 동 조례 개정안은 2024년 4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- 본 개정안은 「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통보 (행정안전부, 2023.12.)」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임.
-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)」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1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것임.
- 현재 위원회 위원은 총 13명(당연직 6명, 구의원 2명, 민간전문가 5명)이며, 이 가운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(부구청장) 1명, 부위원장(재정관리국장) 1명, 위원(복지동행국장, 도시환경국장, 교통건설국장, 디지털재정과장) 4명임.

※ [참고] 조례 제9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정비 전(13명)		→	정비 후(14명~15명)	
당연직	6명		당연직	5명
구의원	2명		구의원	2명
민간전문가	5명		민간전문가	7~8명

- 안 제9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에 따라 위원회는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바, 당연직 위원을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감원하고, 민간전문가를 기존 5명에서 7~8명으로 증원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을 1/2이상으로 구성하려는 것임.

- 이에, 안 제9조제4항의 당연직 위원 중에서 “디지털재정과장”을 삭제하여, 당연직 위원을 5명으로 정비함.
- 이와 같이 살펴본 바,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심의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것으로 개정 에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.
- 동 조례 개정 이후 민간위원 비율을 50%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 참여를 통해 건전한 기금운용을 유도해야 할 것임.

<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평가 >

- 행정안전부는 매년 기금운용성과평가를 하고,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·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해 시정·권고를 하고 있음.
- 성과평가 지표 중 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”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선정 및 실질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위원비율 50% 충족해야 함.
- * 지방기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필수적 민간전문가 비율은 1/3 이상이나, 행정안전부에서는 건전한 기금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에서는 1/2이상으로 상향 규정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수정가결 (수정안 별도 붙임)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

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4조(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·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,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·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5. 7. 24., 2017. 7. 26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24. > [전문개정 2011. 5. 30.]

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(약칭: 지방기금법 시행령)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10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, 장소, 참석자,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2. 10.> [제목개정 2015. 12. 10.]

제8조(기금운용의 성과분석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(이하 “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확인·점검을 위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1. 기금 정비실적의 분석기준
2. 기금 운용 건전성의 분석기준
3. 기금 운용 효율성의 분석기준
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기준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모든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이 제출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·점검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해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, 2021. 12. 31.>

[전문개정 2015. 12. 10.]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4-45관련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4. 4. 17.

발의자 : 신중갑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개정취지에 맞추어 민간전문가 비율을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
명확히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의 비율 수정(안 제9조제5항)

나.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함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3분”을 “2분”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9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동행국장, 도시환경국장, <u>교통건설국장</u>, <u>디지털재정과장</u>이 된다.</p> <p>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<u>3분의 1</u>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⑥ ~ ⑨ (생략)</p>	<p>제9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 <u>교통건설국장</u> 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~ ⑨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9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분</u>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~ ⑨ (현행과 같음)</p>